

## PA/PTA 운영

또한 PA/PTA 내규는 CR A-660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. 모든 PA/PTA 내규는 반드시 교육감 규정 A-660 (CRA-660)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. PA/PTA 내규 템플릿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: <http://schools.nyc.gov/Offices/FACE/filesandresources.htm>

## 교육감 규정 A-660

[교육감 규정 A-660 \(CRA-660\)](#)에서는 각 학교에 학부모회(PA)나 학부모 교사회(PTA)를 설립할 것과 PA/PTA의 관리 조직을 규정하여 학부모들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. 이에 각 학교 PA/PTA에서는 임원직을 규정한 뒤 각 임원을 선출하여 [PA/PTA 내규](#)에 따른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.

PA/PTA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실 (FACE)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.  
[Parent Association webpage.](#)



자세한 정보나  
도움이 필요하시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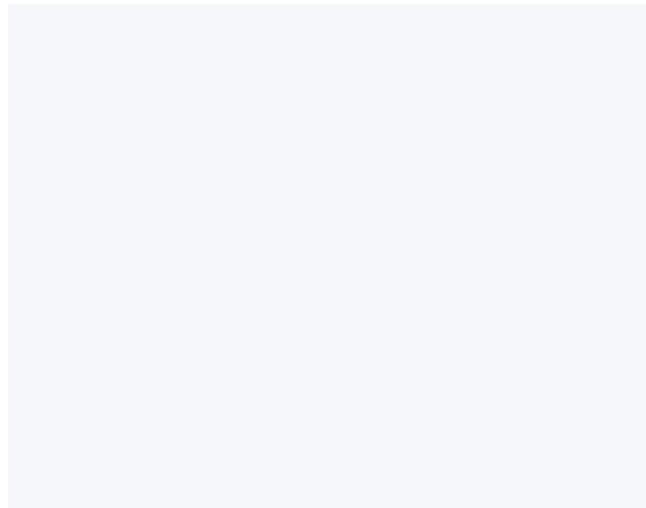
학부모 아카데미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:  
[www.schools.nyc.gov/Offices/FACE/BecomingaParentLeader/default.htm](http://www.schools.nyc.gov/Offices/FACE/BecomingaParentLeader/default.htm)

기타 질문이 있으시면  
언제든지

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실(FACE)  
[FACE@schools.nyc.gov](mailto:FACE@schools.nyc.gov) 또는 전화  
212.374.4118번으로 문의하십시오

# 학부모회 및 학부모- 교사회

PA/PTA 안내



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실  
[학부모 & 가정](#)



## PA/PTA란 무엇입니까?

학부모회(PA) 및 학부모-교사회(PTA)는 학교별로 조직되는 모임으로서 뉴욕시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 PA/PTA는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.

## PA/PTA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?

모든 부모, 양부모, 법적 보호자, 위탁 부모 및 기타 학생의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누구나 PA/PTA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. 자녀 학교의 PA/PTA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. PA/PTA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.

학부모란 용어는 학생의 친부모나 보호자, 기타 학생의 양육을 책임지거나 실질적인 부모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.

여러분 자녀 학교의 PA/PTA 가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학교장이나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.

## PA/PTA의 역할은 무엇입니까?

PA/PTA는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시고, 아이디어를 공유하고, 학교 공동체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. 각 PA/PTA는 저마다 자체 내규가 있으며, 임원을 선출하고 정기 회의를 개최합니다.

각 PA/PTA의 세부적 역할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, 일반적인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:

- n 학교 리더십팀 및 학군 교육위원회에 참여할 학부모 위원 선출
- n 학부모들이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
- n 학부모-교사 컨퍼런스, 오픈 하우스, 커리큘럼 설명회 등의 학교 행사 후원
- n 학교의 교육, 사회,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마련 활동

## PA? 또는 PTA?

학부모회(PA) 회원들은 표결을 통해 해당 학교 교직원들까지 회원에 포함시키도록 내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. 이럴 경우, 이 단체는 학부모-교사회(PTA)가 됩니다.

- n 오직 학부모 회원들의 표결을 통해서만 PA 조직을 PTA로 바꿀 수 있습니다.
- n 이 때, 내규를 수정하여 회원에 학교 교사들 외에 기타 직원(예, 보조교사, 보조원, 교무실 직원, 급식담당 직원 등)까지 포함시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.
- n 학교 관리감독직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PA/PTA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.
- n 또한 학교 교직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PA/PTA의 간부나 후보 지명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.